

제261회 강서구의의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년 11월 28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2018 - 74
- 나. 제 출 자 : 이충현 의원 외 6명
- 다. 제출일자 : 2018년 11월 2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11월 8일

2. 개정이유

현재 용자대상자 선정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여력 조회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적 추천에 불과하여 용자대상자 선정 등의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지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은행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심의사항 정비(안 제6조)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용어 변경(안 제5조4항 및 제8조)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금융기관” → “은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은행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1. 2. ~ 11. 7.)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중 용자 대상자의 선정 및 용자액 결정을 삭제하고 대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에 분기별로 심의 하여 지원하던 것을 수시지원으로 변경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내용

1)[안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 위원회 심의사항 중 제1호 용자대상자 선정, 제2호 용자액의 결정을 삭제
 - 기금은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용자대상자 및 용자 금액 결정 등 실질적인 심사는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회의 대상자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 임

-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생략하여 기존 분기별로 심사하여 지원하던 것을 신청즉시 심사·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함

2)[안제5조, 제8조] 은행법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 정비

- 은행법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금융기관에서 은행으로 변경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구 소재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 또는 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와 조건으로 융자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 ※ 금리- 연 2%, 상환-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중소기업 3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현재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융자 가능여부 및 융자가능 금액은 수탁은행 및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대하된 기금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수탁은행이 모든 결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형식적인 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신청 즉시 심사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법령에 부합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동 조례 시행규칙을 조례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시행규칙에 용자대상 제한업종 등 용자대상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 실적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실적

(단위 : 백만원)

시 기	합계		제조업체		소상공인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16년	57	3,450	9	1,510	56	1,940
2017년	44	2,675	5	1,110	39	1,565
2018년 (3/4분기 현재)	43	4,113	11	2,700	32	1,413

※ 2017년까지 상하반기 연2회 심의 지원에서 2018년 분기별 심의로 변경한 후 용자실적 크게 증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